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05
----------	-------

발의연월일 : 2025. 8. 11.

발 의 자 : 한창민 · 정혜경 · 신장식
전종덕 · 황운하 · 김문수
양부남 · 김 윤 · 김우영
김재원 · 최혁진 · 김용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고,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소원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입법,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6헌마33)을 한 바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

나. 법률의 위헌결정에 ‘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 및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함(안 제47조제1항).

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법원이 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의2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후단 중 “탄핵심판”을 “탄핵심판 및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 및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을 중지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재판이 확정된 뒤 청구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를 “3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전단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 대상이 법원의 확정된 재판인 때에는 해당 판결은 소급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2.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해당 재판의 당사자

제74조제2항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을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확정 판결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그 확정 판결을 한 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환송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확정된 재판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u>탄핵심판</u> 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 ----- ----- ----- ----- ----- - . ----- <u>탄핵심판 및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u>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u>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위헌결정) ----- ----- <u>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u> ----- . ----- ----- ----- ----- -----.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u>위헌결정</u> 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 ---- <u>위헌결정(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u>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생략)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재판이 확정된 뒤 청구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기간) ① -----

--3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 9 –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
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
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72조(사전심사) ① · 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
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
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
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
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
판 대상이 법원의 확정된 재판
인 때에는 해당 판결은 소급하
여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제72조(사전심사)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u>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u>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 4. (생략) ④ ~ ⑥ (생략)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 ----- ---. 1. ----- ----- -----<u>아니하고</u>----- ----- -----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해당 재판의 당사자 3. 제68조제3항----- ----- -----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	---

제출) ① (생략)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8조제3항-----

-----.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그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3항-----

-----.

⑧ 제68조제3항-----

-----.

심을 청구할 수 있다. <u><신 설></u>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⑨ 제4항에 따른 환송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8항----- ----- ----- ----- -----.
--	--